

- 2026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무원 채용시험 -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접수 일정 공고

2026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무원 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9일
부 산 광 역 시 장

1 필기시험 합격자 : 222명 ▶ 명단 별첨

- ※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‘응시번호’ 만으로 합격자를 발표함
- ※ 필기시험 성적 확인: 부산광역시 공무원 채용사이트(<https://busan.recruitcenter.kr>)
→ ‘합격자 발표’ → 로그인(접수 시 이메일주소 / 비밀번호 입력)

2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접수

가. 접수대상 :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

나.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등기우편), 온라인 제출

접수방법	접수기간	접 수 처
방문접수	• 2026. 9. 21.(월) 14:00 ~ 17:00 • 2026. 9. 22.(화) 10:00 ~ 17:00 ※ 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	• 부산광역시청 1층 내빈실3 (전세피해지원센터 원편) ※ 응시자 본인만 접수 가능
우편접수 (등기우편)	• 2026. 9. 9.(수) ~ 2026. 9. 18.(금)까지 ※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하며, ‘26. 9. 18.(금)까지 우편 소인분만 유효	• (우편번호 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 부산광역시청 인사과 공무원력관리팀(10층)
온라인접수 (채용페이지)	• 2026. 9. 17.(목) 09:00 ~ ~ 2026. 9. 22.(화) 18:00까지	• 채용사이트 → 합격자 발표 (https://busan.recruitcenter.kr)

- **접수방법(방문, 우편, 온라인)에 따라 접수기간이 상이함**을 유의하여야 함
 - ※ 우편접수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우편접수기간 마감일[2026. 9. 18.(금) 18:00] 까지 제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방문접수기간에 방문 혹은 온라인접수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
- **상기 접수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**하며,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다. 제출서류

- 공통사항 ▶ **전 채용전형 및 직종(직무) 응시자 필수 제출** ※ 붙임 서식(제1~6호) 참조

- ① 응시자 기본정보 및 서류 목록표 [서식 제1호]
- ② 이력서 [서식 제2호] ※ 이력사항 허위 기재 금지(필요 시 증빙자료 별도 요청)
- ③ 자기소개서 [서식 제3호] : A4 규격 3매 이내,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로 작성
 - ※ 학력, 연령, 가족사항 등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 작성 금지
-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[서식 제4호]
- ⑤ 주민등록표초본 : 주소변동, 개명, 병역 전체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(2026. 7. 22. 이후 발급분만 유효)
 - ※ 주민등록지가 2026. 1. 1. 이전부터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 예정일까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거나, 2026. 1. 1. 이전까지 3년 이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주소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
 - ※ 주민등록표초본 항목 중 **일부사항만 표시한 발급분 제출로 인해 응시자격 (거주지, 병역사항 등)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자격 미충족으로 간주**하며,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
- ⑥ 장애인증명서(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)
 - ※ 합격자 등록마감일까지 응시자격 충족

라. 직종(직무)별 필수자격 증빙서류 ▶ 해당 직종(직무) 응시자 필수 제출

○ 장애인 제한경쟁채용

직종(직무)		증빙서류
실 무 사 무 원	검침	해당없음
	경비	• <u>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</u> 소지 및 운전 가능자 (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외)
	미화 (일반)	해당없음
	사무 (일반사무보조 _의료급여관리)	•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<u>의료인</u> 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<u>의료기관</u> 에서 <u>2년 이상 근무한 경력</u> 을 가진 자
	사무 (통계조사)	• <u>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</u> 자격증 소지자
	사무 (학예보조)	해당없음
	조경 (조경관리)	해당없음
	취사 (조리사· 조리원)	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 <u>조리</u> ” 분야 중 <u>1개 이상 종목(조주 제외)</u> 자격증 소지자 ※ 해당종목 : 조리(기능장), 한식·중식·양식·일식·복어조리(기능사 이상) •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<u>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(구 보건증) 결과 ‘정상’</u> ※ ‘ <u>26. 1. 1. 이후</u> ’ 검진결과에 한함
수도관리원 (수도시설관리)		• <u>국민체력100 인증자(2등급 이상)</u> - p10. 유의사항 참조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 <u>기계장비설비·설치</u> ”, “ <u>전기</u> ”, “ <u>화공</u> ” 중 1개 이상 종목 자격증 소지자

○ 일반채용

직종(직무)		증빙서류
실 무 사 무 원	검침	해당없음
	경비	• <u>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</u> 소지 및 운전 가능자 (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외)
	단속 (운행제한 차량단속)	• <u>1종 보통 운전면허</u> 소지 및 운전 가능자
	미화 (일반)	해당없음
	수영장 (수영강사)	• <u>생활스포츠지도사 2급(수영)</u> 이상 자격증 소지자 •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2에 따른 <u>수상구조사</u> 자격증 소지자
	시설 (일반시설 관리)	해당없음
	시설 (소방)	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안전관리” 중 <u>‘소방설비(기계 또는 전기분야) 산업기사 이상’</u> 자격증 소지자
	전시	• <u>공인어학성적 인증자(아래 중 1개 이상)</u> - (영 어) TOEIC 700, New TEPS 264 또는 TOEIC Speaking IM2 이상 - (일본어) JPT 600 또는 JLPT N3 이상 - (중국어) 신HSK 5급 이상

직종(직무)		증빙서류
	조경 (조경관리)	해당없음
	취사 (영양사)	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<u>‘영양사 면허증’</u> 소지자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<u>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(구 보건증) 결과 ‘정상’</u> ※ <u>‘26. 1. 1. 이후</u> 검진결과에 한함
	취사 (조리사·조리원)	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<u>“조리” 분야 중 1개 이상 종목(조주 제외)</u> 자격증 소지자 ※ 해당종목 : 조리(기능장), 한식·중식·양식·일식·복어조리(기능사 이상)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<u>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(구 보건증) 결과 ‘정상’</u> ※ <u>‘26. 1. 1. 이후</u> 검진결과에 한함
수도관리원 (수도시설관리)		<u>국민체력100 인증자(2등급 이상)</u> - p10. 유의사항 참조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<u>“기계장비설비·설치”, “전기”, “화공”</u> 중 1개 이상 종목 자격증 소지자
도로관리원		<u>국민체력100 인증자(2등급 이상)</u> - p10. 유의사항 참조 <u>1종 보통 이상</u>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
환경미화원		<u>국민체력100 인증자(2등급 이상)</u> - p10. 유의사항 참조

마. 직종(직무)별 우대사항 증빙서류 ▶ 해당 직종(직무) 응시자 중 해당자 제출

○ 공통사항

구분	제출대상	증빙서류
저소득층 등	전 직무	• 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 증명서 •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(차상위계층확인서,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) • 장애인 : 장애인 증명서류(장애인증명서 등) * 일반채용전형 대상자만 •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류(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) • 다문화가족 : 다문화가족 증명서류(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) •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증명서 ※ 공통우대 증빙서류는 2026. 7. 22.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※ 응시자 본인이 상기 공통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(응시자의 부모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) 우대사항 충족으로 인정하지 않음
체력인증	해당 직무	• 국민체력100 ‘인증자(1등급)’ ※ 해당 직종(직무) : 수도권관리원(수도시설관리), 도로관리원, 환경미화원 • 국민체력100 ‘인증자(1~3등급)’ ※ 해당 직종(직무) : 실무사무원[(검침, 경비, 단속(운행제한차량단속), 미화(일반), 수영장(수영강사), 시설(일반시설관리), 시설(소방), 조경(조경관리), 취사(조리사·조리원)] ※ 2026. 1. 1. ~2026. 9. 22.까지의 인증분만 유효

○ 장애인 제한경쟁채용

구분	제출대상	증빙서류
자격증 · 학위	경비	• 「경비업법」에 따른 <u>경비지도사(일반 또는기계) 자격증</u> 소지자
	사무 (일반사무보조 의료급여관리)	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<u>사회복지사 자격증</u>
	사무 (통계조사)	• <u>사회조사분석사 2급</u> 이상 자격증 소지자 • <u>컴퓨터활용능력 2급</u> 이상 자격증 소지자 ※ 자격증 보유개수(필수자격 포함)에 따라 평가 ※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
	사무 (학예보조)	• 미술관련 분야(<u>미술학, 미술사학, 미학, 미술관학, 미술교육학 등</u>) <u>학위(전문학사 포함)</u> 소지자 ※ 상기 명칭과 상이한 경우,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첨부 •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시행령에 따른 <u>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</u> ※ 중복 적용 불가
	조경 (조경관리)	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조경” 중 <u>‘조경’</u> 자격증 소지자
	취사 (조리사·조리원)	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조리” 분야 중 <u>2개 이상 종목(필수 포함, 조주 제외)</u> 자격증 소지자 ※ 해당종목 : 조리(기능장), 한식·중식·양식·일식·복어조리(기능사 이상) ※ 자격증 보유개수(필수자격 포함)에 따라 평가 ※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
	수도 관리원	• 아래 자격증 소지자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기계장비설비· <u>설치</u> ”, “전기”, “화공” - 「수도법」에 따른 “ <u>정수시설운영관리사</u> ” 자격증 소유자 ※ 자격증 보유개수(필수자격 포함)에 따라 평가 ※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

○ 일반채용

구분	제출대상	증빙서류
자격증 · 학위 · 어학	경비	「경비업법」에 따른 <u>경비지도사(일반 또는기계) 자격증</u> 소지자
	시설 (일반시설 관리)	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에 따른 아래 자격증 소지자 - 중직무분야 “전기” 중 ‘<u>전기</u>’ - 중직무분야 “건축” 중 ‘<u>건축설비</u>’ - 중직무분야 “조경” 중 ‘<u>조경</u>’ - 중직무분야 “용접” 중 ‘<u>용접</u>’ - 중직무분야 “기계장비정비·설치” 중 ‘<u>건설기계정비</u>’ - 중직무분야 “안전관리” 중 ‘<u>가스</u>’ - 중직무분야 “에너지·기상” 중 ‘<u>에너지관리</u>’ - 중직무분야 “건설 배관” 중 ‘<u>배관</u>’ ※ 자격증 보유개수에 따라 평가 ※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
	시설 (소방)	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안전관리” 중 ‘<u>소방설비(기계 또는 전기분야) 기사 이상</u>’ 자격증 소지자
	전시	• <u>공인어학성적(2개 언어 이상) 인증자</u> ※ 필수자격에 명시된 어학검정기관에 한함 ※ (예) TOEIC, New TEPS 제출 시 우대사항 미인정 TOEIC, JLPT 제출 시 우대사항 인정 • <u>서비스 관련 분야[비서학, (항공)서비스학, 호텔(관광)경영학] 학위 (전문학사 포함)</u> 소지자 ※ 상기 명칭과 상이한 경우,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첨부
	조경 (조경관리)	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조경” 중 ‘<u>조경</u>’ 자격증 소지자

구분	제출대상		증빙서류
자격증 · 학위 · 어학	실무사무원	취사 (영양사)	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<u>“조리” 분야 중 1개 이상 종목(조주 제외)</u> 자격증 소지자 ※ 해당종목 : 조리(기능장), 한식 · 중식 · 양식 · 일식 · 복어조리(기능사 이상) ※ 자격증 보유개수(필수자격 포함)에 따라 평가 ※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 <u>식품 또는 영양 관련 분야[식품(영양)학, 영양(식품)학] 학위(전문학사 포함)</u> 소지자 ※ 상기 명칭과 상이한 경우,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첨부
		취사 (조리사·조리원)	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<u>“조리” 분야 중 2개 이상 종목(필수 포함, 조주 제외)</u> 자격증 소지자 ※ 해당종목 : 조리(기능장), 한식 · 중식 · 양식 · 일식 · 복어조리(기능사 이상) ※ 자격증 보유개수(필수자격 포함)에 따라 평가 ※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
	수도관리원	수도시설 관리	- 아래 자격증 소지자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<u>“기계장비설비·설치”, “전기”, “화공”</u> - 「수도법」에 따른 <u>“정수시설운영관리사”</u> 자격증 소유자 ※ 자격증 보유개수(필수자격 포함)에 따라 평가 ※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
	도로관리원		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에 따른 아래 자격증 소지자 - 중직무분야 “건설기계운전” 중 <u>‘로더운전’, ‘롤러운전’, ‘굴착기운전’</u> - 중직무분야 “기계장비설비·설치” 중 <u>‘건설기계정비’</u> <u>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</u> ※ 자격증 보유개수(필수자격 포함)에 따라 평가 ※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
	환경미화원		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에 따른 아래 자격증 소지자 - 중직무분야 “환경” 중 <u>‘폐기물처리’</u> - 중직무분야 “전기” 중 <u>‘전기’</u> - 중직무분야 “용접” 중 <u>‘용접’</u> ※ 자격증 보유개수에 따라 평가 ※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

바. 유의사항

○ 제출서류별 유의사항

구분	유의사항
국민체력 100	• 국민체력100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nfa.kspo.or.kr) 예약 등을 통해 실시 가능 • <u>2026. 1. 1.부터 2026. 9. 22.까지의 인증분만 유효</u>하며, 2026. 1. 1. 이전에 인증하여 (재)발급한 인증서는 인정하지 않음.
자 격 증	• <u>인적사항, 자격증번호, 발급일 등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</u> 제출하여야 함 • <u>2026. 9. 22.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유효</u>, 2026. 9. 23.부터 취득(예정)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• 통합·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이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법령에 의해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해당 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수·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인정 • 국가공인 전 취득한 민간자격 등 효력이 없거나,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
학 위	• 취득한 학위(학과)가 우대사항에 명시된 관련 분야 학위(학과) 명칭과 상이한 경우 <u>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[서식 제5호]</u>를 제출하여야 함. • <u>2026. 8월 학위취득(졸업)자까지만 인정</u>되며, 이후 취득(졸업)예정자 또는 학위과정 수료자는 인정하지 않음
어 학 성 적	•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(<u>2024. 11. 11.부터</u>)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• <u>공고문 내 명시된 검정시험기관[TOEIC, TOEIC Speaking, New TEPS, JPT, JLPT, 신HSK]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</u>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(특별)시험 등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.
장애인	•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※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

구분	유의사항
북한 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,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(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) 기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
다문화 가족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
경 력	※ 면접 등 참고 자료로만 활용(필수 제출사항 아님) - 단, 사무(일반사무보조_의료급여관리)는 응시자격 충족 여부 확인 -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(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접수 마감일 2026. 9. 22.기준) ※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 날인,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필요 ※ 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,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직종(직무)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첨부하여야 함. 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‘주당 근무시간’을 명시 ※ 주 40시간 미만인 근무경력의 경우,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-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경력증명서와 자격득실확인서가 일치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(보완 미요청) ※ 비상근 근무 등으로 인해 자격득실확인서 상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급여 입금명세서, 보수내역,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, 은행 거래(입금)내역서 등 추가 제출
기 타	(준)고령자 우대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(1976. 9. 22. 이전 출생자) 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. - 모든 증빙서류(필수 및 우대사항)는 서류접수 마감일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※ 단, 저소득·한부모가족·장애인·북한이탈주민·다문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, 어학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기준 2년 이내 인증분, 국민체력 100 인증서 결과는 2026. 1. 1. 이후 인증분에 한하여 인정 -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○ 기타 유의사항

- 별도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[저소득·한부모가족·장애인·북한이탈주민·다문화가족 증빙서류, 국민체력100 인증서 등(공고문 2~11쪽 참고)]의 경우 해당 서류의 발급(인증)일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
-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,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(접수(우편도착) 익일까지로 한정하며, 접수기간 경과 후 신규 서류제출 절대 불가)
 - * 보완서류는 요청받은 서류에 한하며, 방문접수일('26. 9. 21. ~ 9. 22.) 다음 정상근무일('26. 9. 22. ~ 9. 23.)까지로 한정함
-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의 오른쪽 상단에는 연필로 '응시직종(직무)', '응시번호', '성명'을 기재하여야 함 * 예시: 조정(조정관리), 120001, 홍길동
- 모든 서류는 각 1부씩 사본으로 제출하되, 스테이플러 등으로 편철하지 않은 채로 제출(필요시 클립 사용)하여야 하며, 접수처에서는 별도의 서류 복사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*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자격증 등)의 경우,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* 최종합격 시 사실 공증이 가능하여야 함
- 응시한 직종(직무)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
- 공고문상 안내·유의사항 미숙지, 제출서류 또는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
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부산광역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■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(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)

1. 반환대상 : 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(단,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한함)
2. 반환방법
 -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서식 제6호]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전자우편(passionately@korea.kr)으로 제출 및 접수여부 유선 확인(☎ 051-888-1191)
 - 시청에 내방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우편(수신자 부담 요금 발생)을 통해 반환
3. 참고사항
 -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,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
 -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

3 서류전형 계획

가. 방 법 : 직종(직무)별 내부 배점기준표에 따른 제출서류 평가

나. 합격자 선정

- 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성적 60%, 서류 점수 40%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4배수 이내 선발

※ 동점자가 있을 때는 동점자까지 포함하여 선발

※ 단,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3배수 이내 선발하고 동점자가 있을 때는 동점자까지 포함하여 선발

4 2차 시험[필기+서류] 합격자 발표

가. 일 자 : 2026. 10. 16.(금)

나. 방 법 :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(www.busan.go.kr/nbincruit)

- 붙임 1.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1부(별첨).
2. 직종(직무)별 필기시험 합격 인원 1부(별첨).
3. 제출서류 서식(제1~6호)(별첨) 1부. 끝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과 공무원관리팀(☎ 051-888-119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